

## [판례평석]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대상판결: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한가람 회원<sup>1)</sup>

### I. 들어가며

“끝내 저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가을, 지속적인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괴로워하던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끝나는 경위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이후 담임교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또 이러한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학생이 자살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학교는 어떠한 대응을 했어야 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위로 꼽히는 한국사회에서 법원이 자살과 그 예방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사실관계

대상판결들의 사실관계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다 빠개진 년”, “똥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며, 수업 도중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시럽을 뿌리고 모자 안에 필통을 넣는 등의 일을 당하고 발로 엉덩이 쪽을 파고드는 등의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교 1학년 동성애자 남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서 성폭력을 당한 바 있다고 표기한 바 있고 이 학생의 심리상태가 우울척도검사, 자살생각척도검사, 불안척도검사서 각각 ‘심한 우울상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음’,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음에도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심리검사결과 등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였고, 결국 해당 학생이 자택에서 자살에

---

1) 소수자인권위원회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담임교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 Ⅲ. 판결의 요지

#### 1.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도 심하여져 감으로 인하여 망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고등학교 1학년인 망인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담임교사는 망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이 사건 괴롭힘과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자살 충동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원고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한 채 전학을 권고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였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망인과 반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 경우 망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망인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려했던 결과, 담임교사는 이 사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고, 담임교사로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3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제2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의 요지

위 제1심 판결과 같다.

#### 3. 제3심 판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의 요지-대상판결(1)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망인에 대한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00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4. 파기환송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의 요지-대상판결(2)

피고가 이 사건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으나, 담임교사는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망인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함에도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아니 하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담임교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IV. 대상판결(1)에 대한 평석

##### 1.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리의 동일 적용

대상판결(주심 김신)이 설시한 법리는 ①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에 있어 교사, 교장 등 학교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생 자살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

어야 하는데 ②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계속되었다면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나 집단괴롭힘이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자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에서 형성된 법리로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 2005다16034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교사가 임원회의를 위하여 학교에 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를 통하여 망인의 정신적 상태를 알게 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망인이 자살하였고 망인이 자살 전날 교복 대신 검정 스웨터를 입고 등교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다. 즉 이 2005다16034 사건은 학생이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호소하거나 자살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예견가능”했는지 판단해야 했던 사건으로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이미 집단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상담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한 자살생각척도검사에서는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계획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 ‘자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라는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등이라고 답하여 총점 29점으로 ‘자살 충동 매우 많음’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학생은 ‘내가 웃으면서 너네 죽인다고 하는 게 거짓말 같지? 12/30일날 죽는다는 것도 거짓말 같지?’라는 메모를 남겨 교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 위 검사에서 자살 동기로 “보복”의 언급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았을 때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살충동이 크다는 것을 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로 인한 자살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결국 대상판결 집단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에 처한 학생이 “자살위험을 호소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자살 위험을 호소하여 자살가능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 2. 자살과 관련한 사실관계 인식의 문제점

대상판결은 법리의 적용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자살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자살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오류로 나타난다.

대상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집단괴롭힘과 자살의 연관성을 경시한다는 것이다. 집단괴롭힘과 자살의 연관성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미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와 미 법무부 산하 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보고(2010)에 따르면 2008년에 38건의 학교폭력 사망사건 중 15명은 살해, 7명은 자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으나, 학교생활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집단괴롭힘 등이 청소년 자살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sup>2)</sup>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집단괴롭힘이 있더라도 그 집단괴롭힘이 ‘중대, 악질적’이어야만 자살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집단괴롭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살유인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망인에 대한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서 ‘중대, 악질적’인 집단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으로 행위의 태양이 폭력적인지 여부를 제시한다. 이는 물리적 폭력은 자살과 연관성이 크지만,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자살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신체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보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와 더 심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폭력 형태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이다.<sup>3)</sup>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중대, 악질’의 판단에 있어 물리적 폭력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자살을 예견할 만한 정도의 집단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밀고 나가면 피해 학생이 언어적, 정서적 집단괴롭힘으로 심각한 고통이 있음을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교사로서는 학생의 자살을 예방할 책임이 없게 되어 버린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집단괴롭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라는 판단이다. 이는 어느 정도가 ‘빈번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을뿐더러 말 그대로 이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횟수로만 드러나기는 힘들다. 이러한 폭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

2) 박지영,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특성과 법원의 태도: 심리사회적 부검 결과를 중심으로」, 제3회 SOGI 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2014, 5쪽.

3) 위의 글, 4쪽

역시 항시적인 불안과 긴장상태에 놓이게 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겪도록 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해학생은 사망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언어적으로 명백하게 자살을 예상할 만한 표현을 했음에도 특이한 “행동”에 집착함으로써 중요한 사실관계를 역전시켜 버린다. 또 “등교하지 않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한 것 역시도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학교에서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험공간(학교)과 자살공간(집)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험공간에서의 예견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교사 등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 3.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에 대한 몰이해

편견 또는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bias or hate-motivated bullying, 이하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이란 “피해자의 실제의 또는 짐작된 민족, 출신국가, 이주자 지위, 신앙, 성별, 성적지향, 나이, 장애, 정치적 소속, 인종, 기타 신체적·문화적 특성에 관한 편견 또는 적대감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동기로 한 협박, 괴롭힘, 편협한 비방 또는 모멸적인 발언,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 파괴행위를 통해 정서적 고통, 신체적 손상, 재물 손괴를 가하려는 모든 행동 또는 시도”를 말한다.<sup>4)</sup> 이 사건 집단괴롭힘은 “똥녀”, “걸레녀”이라는 욕설이나 “스치기만 해도 더듬더듬 소문”을 내는 등의 양상에서 보듯 피해학생이 보인 동성애적 성적지향, 그리고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성별비순응(gender nonconformity)<sup>5)</sup>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러한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은 다른 일반적인 집단괴롭힘과는 달리 소수자 개인의 변화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괴롭히는 그 행위를 넘어 “의미전달 범죄(message crimes)”<sup>6)</sup>로서 피해자가 담지하고 있는 그 소수자로서의 성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네스코에서 펴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에서는 다수의 연구들을 인용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자해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일도 더 많다고 지적한다.<sup>7)</sup>

4) Faye Ong edit., 『Bullying at School,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26쪽.

5) 성별정체성, 성역할, 성별표현 등에 있어 태어난 성별에 따른 규범적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6) 위의 책, 25쪽.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2005년에 있었던 청소년 성적소수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반동성애적 폭력의 경험을 한 청소년 성적소수자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된 청소년 성적소수자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 성적소수자보다 자살위험성이 높고, 전체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8)</sup> 이처럼 이 사건 집단괴롭힘은 동성애 내지는 성별비순응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괴롭힘으로서 그 자체로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원심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들을 전혀 인식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채 교사에게 학생 자살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했다.

## V. 대상판결(2)에 대한 평석

### 1. 모순적 판단의 실시

이 대상판결은 위 대상판결(1)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부검<sup>9)</sup>이 이루어졌고, 이 심리적 부검을 한 사회복지학 교수와 청소년 동성애에 관하여 연구를 해 온 사회복지학 교수의 전문가 증언이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재판장 문형배)는 심리적 부검 결과와 위 전문가들의 증언은 “망인의 심리상태와 주변 상황을 바탕으로 자살의 예견가능성을 분석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곧바로 일반 교사인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위험성에 관한 자료들은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집단괴롭힘이 자살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보아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집단괴롭힘 자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2009년 6월 중순 망인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하면서 “담임교사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중략) 그 때문에

---

7) 유네스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역,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28쪽

8) 강병철/하경희,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2005, 281쪽.

9)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자살사망자의 개인 기록, 서류, 경찰 및 의료기록이나 여타 관련 자료들, 그리고 유가족이나 친구 등 사망자의 유의미한 사람 등과의 심층적인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자살과 죽음을 초래한 여러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박지영, 앞의 글, 6쪽.

망인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시함으로써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 이는 결국 교사에게 학생 자살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책임이 없다는 판시와는 모순되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따르려고 하는 동시에 사실관계상 학생 자살에 관한 학교 측의 책임을 묻지 않기는 어려운 사정에 따라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이 주장, 입증한 바에 따라 법원이 환송 전 판결의 결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2.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측의 면책 기준 실시

그러나 대상판결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학교 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에 대두된 것이고 관련 민간단체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 자료가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집단괴롭힘이 있는 경우 ①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고 ② 가해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의치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해야 하며 ③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고<sup>10)</sup> ④ 동성애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않고, 가해자애가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sup>11)</sup>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이러한 기준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의 전문가들 증언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단기

10) 이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담임교사는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정체성을 말함으로써 신뢰관계가 무너진 바 있다.

11) 자살전문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학 권유는 제1심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소극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단절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교사의 가해행위로 평가한다.



준을 제시하고 학교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VI. 결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011년 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또한 이 법률 제2조 제1항은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4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교육기관은 자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자살을 예방해야 하고, 사법부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자살예방을 위한 충실한 법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법판결들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놓치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의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일관되게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이고 자살은 학생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러한 주장은 위 자살예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크다.

학생이 세상을 뜨기 3일 전 마지막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경위서는 이 학생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쓰고 난 후 “끝내 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다 이 중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지우고 다시 “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을 때, 이 학생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겠는가. 궁지에 내몰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다 결국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된 이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기사화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파기환송심 대리를 자청했다. 준비서면을 쓰면서, 또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많이 아팠고,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이 지나 함께 이 사건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만나러 부산에 갔었다. 그 다음날에는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 흥겨운 퍼레이드 끝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혼자인 줄 알았네, 벽장 속에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sup>12)</sup>를 부르며 많이 울었다. 이 노래의 끝은 “이제는 희망의 노래 불러야 할 때, 달라서 행복한 삶 누리기 위해”였지만, 이 학생에게는 희망의 노래도, 달라서 행복한 삶도 없었다.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러한 소수자가 법정에서 조차 냉대를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도 어디선가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벽장 속에 숨어 혼자라고 되뇌고 있을 테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벽장문을 철문으로 만들어 버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건 결과에 상관없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라는 말이라도 건넸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상계해야 한다며 얼마 되지 않는 위자료의 지급을 미뤘다.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을 때 이른바 ‘도의적 책임’까지도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더욱 문제인 이유이다.

---

12) 게이코러스 지보이스(G\_Voice) 작사/곡, “벽장문을 열어”